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표지공문 참조

시행일 표지공문 참조

수신 김준호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2.당사자	성명	김준호 (510213-1*****)					
	주소	(31998) 충남 서산시 예천3로 10, 205동 106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u>기계가공1급, 발급일 : 1984.04.04./기계가공2급, 발급일 : 1991.11.12</u>)을 발급받은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확인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계가공1급, 기계가공2급)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결격사유) 및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6. 청문실시	기관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부서명	천안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담당자	강상목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2층(충남타워)		전화번호	041-620-9514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11시					
	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충남타워) 천안고용센터 4층 세미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지역협력과장				
	성명	김은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